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출년월일 : 2002. 12. 3
제출자 : 정윤숙 의원

1. 수정이유

- 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미래예측과 체계화를 위해 도지사는 매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위원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함
또한 위원회 선임자격을 완화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안 제2조 제6호의 “전시지원사업”을 “홍보지원사업”으로 개정함
- 안 제4조 제1호의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을 “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 안 제4조 제6호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기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사항 등”으로 개정함.
- 안 제5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
- 안 제5조 제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로 개정함
- 안 제11조 “규정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를 “시행에”로 한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6호의 “전시지원사업”을 “홍보지원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의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을 “첨단 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 제6호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기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항 등”으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로 한다.

안 제11조 “규정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를 “시행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 (첨단산업 지원 등) -----. 1. ----- 2. ----- 3. ----- 4. ----- 5. ----- 6. -----, 전시지원사업 --	제2조 (첨단산업 지원 등) -----. 1. ----- 2. ----- 3. ----- 4. ----- 5. ----- 6. -----, <u>홍보지원사업</u> --
제4조 (기능) -----. 1. <u>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사항</u> 2. ----- 3. ----- 4. ----- 5. ----- 6. <u>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u>	제4조 (기능) -----. 1. <u>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u> 2. ----- 3. ----- 4. ----- 5. ----- 6. <u>기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u>
제5조 (구성) ①-----. ② ----- ③ -----	제5조 (구성) ①-----. ② ----- ③ -----

원 안	수 정 안
<p>④ -----</p> <p>----- <u>다음 각호의 자</u> -----</p> <p>-----.</p> <p>1. -----</p> <p>2. -----</p> <p>3. <u>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u></p>	<p>④ -----</p> <p>-----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u> -----</p> <p>-----.</p> <p>1. -----</p> <p>2. -----</p> <p>3. <u>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u></p>

제11조(시행규칙) ----- 규정외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